



규정

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B201
제정일자	2011. 01. 18.
개정일자	2018. 02. 28.
개정번호	4
페이지	1/4

목 차

부 칙

작성부서	경영지원실	제정일자	2011. 01. 18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				사무처장	기획처장	
직 책	과 장					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

규정

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문서번호 TWP-B201

제정일자 2011. 01. 18.

개정일자 2018. 02. 28.

개정번호 4 페이지 2/4



규정

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문서번호 TWP-B201


제정일자 2011. 01. 18.

개정일자 2018. 02. 28.

개정번호 4 페이지 3/4

개정이력
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12. 01. 09.	- 학사행정시스템의 전면개편 -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위원 수 변경
2	2014. 01. 21.	- 제3조(구성) ①항 개정 - 제5조(임명 및 위촉) ②항 개정
3	2016. 02. 18.	- 제1조(목적) 개정 - 제2조(기능) 전문개정 - 제3조(구성) 개정 - 제4조(자격) 삭제 - 제5조(임명 및 위촉) 삭제 - 제6조(위원장) 삭제 - 제7조(임기) 개정 - 제8조(회의) 개정 - 제9조(회의록) 개정 - 제10조(간사) 삭제 - 제11조(비밀유지) 삭제 - 제12조(사무처리) 삭제
4	2018. 02. 18.	- 제3조(구성) 개정 - 제8조(회의) 개정

	규정	문서번호	TWP-B201	
		제정일자	2011. 01. 18.	
	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28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이라 한다) 학칙 제48조의2에 의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02.18.>

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의결한다.

1.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6.02.18.]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4.01.21., 2018.02.28.>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01.09., 2016.02.18., 2018.02.28.>

1. 교직원 : 3명
2. 학생 : 3명 (총학생회장, 대의원의장, 대의원부의장)
3. 관련전문가 : 1명(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)
4. 삭제

③ <삭제 2016.02.18.>

④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<신설 2016.02.18., 개정 2018.02.28.>
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경영지원과장으로 한다.<신설 2016.02.18.>

제4조(자격) <삭제 2016.02.18.>

제5조(임명 및 위촉) <삭제 2016.02.18.>

제6조(위원장) <삭제 2016.02.18.>

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직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6.02.18.>

	규정	문서번호	TWP-B201
		제정일자	2011. 01. 18.
	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28.
		개정번호	4

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며,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2.28.>

② <삭제 2016.02.18.>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6.02.18.>

제10조(간사) <삭제 2016.02.18.>

제11조(비밀유지) <삭제 2016.02.18.>

제12조(사무처리) <삭제 2016.02.18.>

제1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
제14조(관련문서) 이 규정의 관련문서는 다음과 같다.

1. 고등교육법
2.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6일에 공포된 학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	규정	문서번호	TWP-B201	
		제정일자	2011. 01. 18.	
	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28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